
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3공구)〕

- 점검일시 : 2019.08.30 (금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방음벽 설치중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구간에는 낙하물 방지시설과 추락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난간이 느슨한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7(고소작업대)</p>		2019.09.02	
		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방음벽 설치중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구간에 낙하물 방지시설과 추락방지 안전난간시설 보완 완료 함.</p>	
<p>○ 보건 관리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면보수 작업장은 각종 유해물질이 방치된 공간에서 희석제통을 받침으로 근로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, 더운 날씨에 각종 유해물질을 음료수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니 근로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, 재발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 및 근로자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바람.</p> <p>- 주변에는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(유해성 등의 주지)</p>	 	2019.09.02	 
		<p>○ 보건 관리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면보수 작업장에서 음료수보관함에 음료수 표식 부착하여 구분하고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함. 근처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도록 함.</p> <p>-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비치 함.</p>	
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면보수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그라인더는 보호 커버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 장치의 해체 금지)</p>		<p>2019.09.02</p> 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수락고가차도 면보수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그라인더는 보호 커버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함.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설전선은 피복이 노출되어 있고, 일부 콘센트는 접지극이 파손되어 있으니 교체 후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</p>		<p>2019.09.02</p>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피복이 노출된 가설전선은 전선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완하고 접지극이 파손된 콘센트는 교체하여 사용 함.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동부간선도로는 현장 여건상 교통량이 많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할 현장임을 감안하여 신호수 정위치 근무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</p>		<p>2019.09.02</p> 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현장여건상 교통량이 많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할 현장임을 감안하여 신호수를 대상으로 근무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 함.</p>	